#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

[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]

의안번호 2177

발의일자 : 2021. 12. 23.

발 의 자 : 윤영희, 김경완

강수정, 조윤형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」이 개정되어 회의 규칙을 인용하는 2건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임법예고 : 2021. 12. 23. ~ 12. 28.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
2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도 첨부

#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"「회의규칙」제68조"를"「회의규칙」제81조"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72조제2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84조제2항"으로, "서명날인하여"를 "서명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「회의규칙」제47조제1항"을 "「회의규칙」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본의의"를 "본회의"로, "「회의규칙」제44조의 제1항"을 "「회의규칙」제51조제1항"으로, "「회의규칙」제58조의 제1항"을 "「회의규칙」제70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「회의규칙」제47조제1항"을 "「회의규칙」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"「회의규칙」제47조제1항"을 각각 "「회의규칙」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제47조제4항"을 "제54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「회의규칙」제46조"를 "「회의규칙」제53조"로 한다. 제10조제2항 중 "「회의규칙」제47조제1항"을 "「회의규칙」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	제1조 (목적)
시 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	
한다) <u>「회의규칙」제68조</u> 의	「회의규칙」제81조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	제2조(용어의 정의)
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	
같다.	
1. "보존회의록"이라 함은 <u>「지</u>	1 <u>「ス</u> ]
<u>방자치법」 제72조제2항</u> 의 규	<u> 방자치법」 제84조제2항</u>
정에 따라 <u>서명날인하여</u> 서울	<u>서명하여</u>
특별시 금천구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4. "전자회의록"이라 함은 <u>「회</u>	4 <u>「회</u>
의규칙」 제47조제1항의 규정	의규칙」 제54조제1항
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	
게 공표하거	
5. •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회의록) ①본의의 회의록에	제3조(회의록) ①본회의 회의록에
는「회의규칙」제44조의 제1항	는「회의규칙」제51조제1항을,
을, 위원회 회의록에는 「회의	위원회 회의록에는 「회의규

② (생략) 제4조(전자임시회의록) ①전자임 시회의록에는 「회의규칙」제4 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비밀을 ②·③ (생 략) 제5조(보존회의록) ①보존회의록 은 「회의규칙」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 록에 게재하 ②의장은 의원으로부터 「회의 규칙 1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하 제6조(비공개회의록) ① (생 략) ②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「회의규칙」<u>제47조제4항의 --</u> 제9조(자구의 정정) ①의장은 발 언한 의원, 금천구청장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「회의규칙」제46 조의 규정----

②·③ (생 략)

규칙 \_ 제58조의 제1항을 ----.

<u>칙」제70조제1항을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전자임시회의록) ①
「회의규칙」제54
조제1항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보존회의록) ①
「회의규칙」제54조제1항 -
② 「회의규
<u>칙」제54조제1항</u>
제6조(비공개회의록) ① (현행과
같음)
2
「회의규칙」 <u>제54조제4항의</u>
제9조(자구의 정정) ①
발언자로부터 <u>「회의규칙」제53</u>
<u>조</u> 의 규정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 법령

□ <b>지방자치법</b>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7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